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 심사 보고서

1996. 10. 24 .

행정재무위원회

####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6년 8월 21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보류  
제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구 재정확충 및 도시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안 제7조)
-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안 제18조)
-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안 제15조)
  1.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사업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3.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안 제24조)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안 제30조)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우리구의 재정 전망은 복지수요의 증가,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급증 등 재정수요가 팽창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은 신장세가 극히 미미한 어려운 여건으로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주차 및 교통질서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 현실화 실천방안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기업환경의 정비, 자율성 확보, 책임경영 등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문제 등 경영합리화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 등 신중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사업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의 고육책으로 차량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의 노상주차장을 점차 폐쇄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공영노상 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수탁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방향에서 우리구의 공단설립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의 주내용인 사업규모, 수지전망, 인력관리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審查結果 : 원안의 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72

제출년월일 : '96. 8. 1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구 재정확충 및 도시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안 제7조)
-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안 제18조)
-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안 제15조)
  1.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사업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3.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안 제24조)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안 제30조)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 3. 기타사항

-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주차, 교통시설물 등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3장 사업

제1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3.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제16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대행사업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4장 재무회계

제1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공단의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
2. 구에서의 전입금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구 세입에의 납입

제23조(결손금의 처리) ① 매 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감 독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5.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고문공인회계사) ① 공단은 제25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27조(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요금)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97. 12. 31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영등포구 예산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